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
----------	-----

제출연월일 : 201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2002년 7월 31일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유보하여 왔으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인 유해성 전용 P·P마대용량이 20리터로 단일 용량만 있어, 소량 배출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작은 용량인 5리터를 추가하여 제작하고자 함.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반영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15 % 인상(제10조제1항 별표 2)

봉투종류	봉투용량	판매가격		공급가격	비고
		개정전	개정후		
일반용	10리터	220	260	231	
	20리터	420	490	442	
	50리터	1,020	1,180	1,075	
	75리터	1,530	1,760	1,613	
	100리터	2,040	2,350	2,151	
음식물전용	3리터	60	70	63	
	5리터	110	130	115	
	10리터	220	260	231	
	20리터	420	490	442	
재사용	10리터	220	260	231	
	20리터	420	490	442	
유해성전용 PP포대	5리터	-	800	776	
	20리터	1,100	1,260	1,151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6조제2항 별표 4)

- 개정전 23,800원/톤 ⇒ 개정후 52,500원/톤(28,700원/톤 인상)

구 분	배출 기준	반입수수료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톤당	52,500원	

나. 불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인 유해성 P·P마대 5리터 용량추가

○ 기존 20리터 단일 용량에서 5리터 용량 추가

다. 적용시기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가격 인상 시기를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5. 9. 17 ~ 2015. 10.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행정규제 저촉사항 없음 [기획감사실- 11816(2015.10.27)]
-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주민생활지원- 64818(2015.11.9)]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 12111(2015.11.3)]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의 별표 2 및 제16조제2항의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봉투종류	봉투용량	공급가격	판매가격	비고
일반용	10리터	231	260	
	20리터	442	490	
	50리터	1,075	1,180	
	75리터	1,613	1,760	
	100리터	2,151	2,350	
음식물전용	3리터	63	70	
	5리터	115	130	
	10리터	231	260	
	20리터	442	490	
재사용	10리터	231	260	
	20리터	442	490	
유해성전용 PP포대	5리터	776	800	
	20리터	1,151	1,260	

※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방법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 제작비 + 판매이익

[별표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출 기준	반입수수료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톤당	52,500원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스티로폼 등 비중이 낮고(0.1이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폐기물은 기본료 5,000원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단 1m³ 이상에 한하여 적용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연락처	(033) 330 - 2340

관련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